

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7년 12월 19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언

국 무 위 원

박 상 기
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5257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57조의2(형중 상항의 금지 등)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.
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현행 ‘불이익변경의 금지’를 ‘형중 상항의 금지’로 대체하고 양형 상항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